

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05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정부 산지유통정책 흐름에 맞춰 평창군 농산물의 품목별 규모화 및 공동·공선 출하조직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체계활성화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농산물 산지유통체계활성화 지원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
-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8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
 - 평창군 농산물의 유통 전문화와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위하여 현재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관련 사업
-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
- 이외의 행정에서 위탁하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일체
- 평창군의 전략 및 육성 품목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

라. 민간위탁기간

- 2023. ~ 2026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의계약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사업비 : 790백만원(군비)
 - 사업추진 위한 운영비 : 200백만원
 - 평창군 농산물 판촉 및 홍보비 : 30백만원
 - 기업체 등과의 공동구매 추진 등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
 - 대형유통업체 연계, 평창 주요 농산물 출하 시기별 특판 행사 등 추진
 - 공동·공선출하 농산물의 물류비 및 상품화 비용 지원 : 550백만원
 - 공선·공동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품화비, 물류비 우선지원
 - 일반 농산물 물류비 및 상품화비용 지원(향후 축소지원)
 - 농가 조직화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: 10백만원
 - 공동·공선을 실시하는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참여농가 교육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산지유통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·가공·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이 필요함
- 현재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개인출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
- 변화하는 산지유통정책은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통한 품목별 거점 APC시설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또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유통통합조직(육성형) 승인을 계획하고 있음
- 이에 기존에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판매·가공·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평창군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 취급 실적(최근 3년 이내)

연도별	'22년	'21년	'20년
취급량(톤)	47,775	57,890	41,599
취급액(억원)	915	722	603

- 공동·공선출하회 육성

■ 평창군 공선·공동출하회 현황('22년)

- 조합공동사업법인 : 13품목, 36개조직, 764호,
4개농협(평창, 대화, 진부, 대관령)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2.3.>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9조(계약의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(指名)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파.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
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
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□ 농업협동조합법

제112조의2(목적)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
축산물의 판매·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
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제112조의8(사업)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

4. 국가·공공단체·조합·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
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